

보도시점 (전매체) 2. 13(화)
국무회의 종료시점

중소기업 '졸업 유예기간' 5년으로 확대, 중소 →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!

-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, 5년(당초 3년)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개정
 - 추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중기(中企)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.

‘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’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(당초 3년, 개정 후 5년)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,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·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.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.

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·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, 이에 힘입어 '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.

* 중소 → 중견기업 진입수(개사): ('18) 123 → ('19) 242 → ('20) 394 → ('21) 467

한편,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*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~90개사이며, 이는 특히 중견기업 1~2년차에 집중 발생**하는 경향을 보였다.

- * 전체 중견기업의 6.2% (341社)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 ('21, 중견기업실태조사)
- ** '19~'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사(社) 중 중견기업 1~2년차가 135社 (56%)

이에,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.

이번 개정으로, 신규 유예 기업 중 당초 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~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되며,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, 금융·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,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,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
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“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·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,000개사를 상회하며, 매출 약 100조원,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·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”라며,

- * '22년 중소기업 졸업유예 확인서 발급기업 1,192社 연간 총 매출액 97.8조원, 피보험자수 16.3만명

“중소기업들이 대·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,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”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·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정주 (044-204-7420)
		담당자	사무관	김두헌 (044-204-7425)



붙임1
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·② (생략)	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<u>3년</u> 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< 부 칙 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붙임2

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 유예제도 개요

□ 중소기업 범위

-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

규모 기준

- ①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(400~1,500억원) 이하

구분	매출기준	제조업(업종수)	비제조업(업종수)
그룹1	1,500억원	금속, 펄프, 전기장비 등(6)	-
그룹2	1,000억원	전자통신, 기계, 자동차 등(12)	도소매, 건설, 광업, 농림어업 등(6)
그룹3	800억원	음료, 인쇄, 시계, 기타 등(6)	운수, 하수처리, 출판정보(3)
그룹4	600억원	기계·장비수리업(1)	보건, 과학기술, 사업지원 등(5)
그룹5	400억원	-	숙박음식, 부동산, 금융보험, 교육(5)

- ② 상한기준 :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(업종 무관)

독립성 기준

- ③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
-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 30% 이상 직·간접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기업 제외
- ⑤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 초과시 제외

중소기업 유예

-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(→ 개정후 5년) 유예
- * 유예제외 :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, 공시대상기업집단, 기존 유예를 받은 기업 등

□ 졸업유예 제도 (1982. 12월 도입 후 현재까지 운영 중)

- (유예기간)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, 그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(→ 5년)간 중소기업으로 간주
- (유예제외)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 가능하여,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음
- 다만,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